

자동차공제 보통약관 목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공제 I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4조 조합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대인공제 II 와 대물공제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제7조 조합원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조합원 개별적용

제10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제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공제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제13조 조합원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제16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제18조 제출 서류

제19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 청구절차 및 유의 사항

제22조 제출 서류

제23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4조 공제금의 분담

제25조 조합의 대위

제26조 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27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28조 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29조 공제계약의 성립

제3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1조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제32조 청약 철회

제33조 공제기간

제34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조합원 등의 의무

제3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3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7조 사고발생 시 의무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8조 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제39조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제40조 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제41조 공제계약의 취소

제42조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제43조 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제44조 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45조 분담금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6조 약관의 해석

제47조 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제48조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 보험사기 행위 금지

제50조 분쟁의 조정

제51조 관할법원

제52조 분담금의 분할 납입

제53조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제54조 공제계약의 부활

제55조 추가분담금 등의 납입

제56조 준용규정

제5편 승무원공제 보상내용

제57조 보상책임(승무원공제)

제58조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제59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 별표와 붙임

<별표 1> 대인공제 지급기준

<별표 2> 대물공제 지급기준

<별표 3> 과실상계 등

<별표 4> 등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붙임) 공제분담금 단기요율표 [별표3]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조합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항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6.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8.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의무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10.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1.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2. 조합원 : 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조합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조합원 :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조합원이 지정하여 공제계약청약서에 기명조합원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만약, 기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조합원으로 봅니다.
 - 나. 친족조합원 :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조합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조합원 : 다른 조합원(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을 말함)을 위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 중인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공제계약자동차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4.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조합원의 부모 : 조합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조합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조합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5. 휴대품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6.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7. 보험가액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 자동차공제의 구성

①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판매하는 자동차공제는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자기차량공제(전기택시에 한함)」, 승무원공제의 5가지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공제에 가입합니다.

1. 의무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공제 : 의무공제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의무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공제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공제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공제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공제」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차량공제」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전기택시에 한함)
승무원공제	자동차사고로 승무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와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지원 (대전지부에 한함)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 1 장 배상책임

제 1 절 대인공제 I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공제 I」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조합원

「대인공제 I」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공제 I」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공제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조합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공제Ⅱ 와 대물공제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공제Ⅱ」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공제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공제」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조합원

「대인공제Ⅱ」와 「대물공제」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공제Ⅱ」와 「대물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조합원이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7.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공제」 공제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8.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공제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가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조합원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조합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조합은 제9조(조합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조합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하는 공제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 ①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서 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공제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

지 급 공 제 금	=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에 따라 조합 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 용	-	공 제 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공제Ⅱ」 : 「대인공제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공제계약자동차가 「대인공제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공제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공제」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 부담금

① 조합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조합이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또는 「대물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
 - 1 사고당 「대인공제Ⅰ·Ⅱ」는 300만원, 「대물공제」는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 1 사고당 「대인공제Ⅰ」은 300만원, 「대물공제」는 100만원

② 조합원은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조합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공제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공제」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 차 또는 타 물체^(*1)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2)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 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공제계약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 조합원

「자기차량공제」에서 조합원은 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기명조합원을 말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긴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송 또는 신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2. 공제계약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공제계약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2}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기명조합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공제계약자동차를 빌린 임차인^{(*)3}
 - 다.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조합원 및 기명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2)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15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자기차량공제」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지 급 공제금	=	공제계약자동차 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	---	--------	---	-----------------------

2. 위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공제계약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공제계약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조합이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그 밖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위 '자기부담금'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공제계약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5. 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공제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조합이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공제계약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공제」의 공제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7. 조합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공제계약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 조합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 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제16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대물공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차량공제」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제계약자동차가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계약자동차의 반환여부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17조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

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에서 조합은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8조 제출 서류

조합원은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공제」	「대물 공제」	「자기 차량 공제」
1. 공제금 청구서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 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 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공제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공제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 증명서		○	○
9. 그 밖에 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조합은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제19조 가지급금의 지급

- ①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조합은 이 약관상 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조합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8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조합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청구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공제 I·II」	「대물공제」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 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23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2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4조 공제금의 분담

「대인공제 I·II」, 「대물공제」, 「자기차량공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공제계약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frac{\text{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조합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서 공제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5조 조합의 대위

① 조합이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조합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조합은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공제계약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1.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2.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③ 조합원은 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① 조합은 이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조합이 공제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조합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조합은 조합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控除)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8조 공탁금의 대출

조합이 제2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조합원은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29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이 공제계약은 조합원이 청약을 하고 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조합원이 청약을 할 때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분담금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조합이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계약청약서를 조합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제1회 분담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계약이 성립하면 조합은 제33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제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제1회 분담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청약을 한 경우 조합원에게 약관 및 조합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조합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제외합니다.
 1.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약관 및 조합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조합이 청약 시 조합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 서명^(*1)을 하지 않은 경우

(*1)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조합은 이미 받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리며, 분담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조합이 공제계약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청약 철회

- ① 조합원은 자동차공제분담금 영수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자동차공제분담금 영수증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조합이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의무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계약
 3.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 ④ 조합은 조합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합원이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

습니다.

⑥ 조합이 제4항의 분담금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33조 공제기간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 제 기 간
1. 원 칙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공제(책임보험을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공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공제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 외 :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1) 및 의무공제	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이전에 분담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 합니다.

(*1)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자동차공제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공제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4조 사고발생지역

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조합원이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조합원 등의 의무

제3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조합원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조합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차액분담금을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4조(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은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4조(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조합원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조합원이 이를 알리지 않으면 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사고발생 시 의무

① 조합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조합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5.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控除)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8조 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① 조합원은 의무공제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계약청약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조합원. 다만,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의 권리·의무를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9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공제계약금액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분담금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계약 체결 후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이 공제계약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9조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등으로 조합에 통지하여 조합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의한 조합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 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공제계약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분담금적용요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공제계약자
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조합원에게 남은 분담금을 돌려드리거나, 공제계약
자동차의 양도 후의 조합원에게 차액분담금을 청구합니다.

⑤ 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상
속하는 경우 이 공제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
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조합원으로 하
는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0조 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조합에 통지하여 조합이 승인한 때부터 이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조합이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조합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여부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계약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 계약사항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조합이 제1항, 제3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분담금적용요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조합원에게 남은
분담금을 돌려 드리거나 차액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조합원
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조합이 제1항, 제3항의 승인을 거절할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
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분담금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제41조 공제계약의 취소

조합이 조합원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조합은 공제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43조 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자동차(의무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39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과 공제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조합이 과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공제계약이 의무공제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공제계약을 맺기 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공제기간이 개시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 ① 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조합이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조합원이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조합이 이를 승인 하였을 때
 - 다. 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항이 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조합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조합이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39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차액분담금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이 그 분담금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조합이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조합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의무공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조합은 보상합니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다른 보험(공제를 포함)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45조 분담금의 환급 등

- ①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분담금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분담금과 변경 후 분담금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조합의 고의·과실로 분담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조합원이 적정 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조합은 이를 안 날 또는 조합원이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분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조합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0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3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분담금
2.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뺀 잔액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조합원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공제의 해지는 제외)
2. 조합이 제41조(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제44조(조합의 공제계약 해지)에 따라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분담금 미납으로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⑤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운휴

1. 조합원이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휴지하여 이 공제에 계약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을 뺀 나머지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신고가 승인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 종료 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조합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관계관청이 휴업 또는 휴지신고를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공제계약자동차의 명세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공제계약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조합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⑦ 이 약관에 의해 조합이 조원원이 낸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⑧ 조합이 제7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4 장 그 밖의 사항

제46조 약관의 해석

-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조합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 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 ① 조합은 제18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37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공제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공제)회사 및 보험(공제)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제계약자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공제종목, 보장종목, 공제계약금액, 자기부담금 및 분담금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8조 공제계약자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조합은 공제계약자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9조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합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 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조합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조 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조합의 본부, 지부 또는 사업소소재지 중 조합원이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2조 분담금의 분할 납입

①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는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분담금의 분할 납입을 요청하여 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분할 납입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분담금’이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분담금을 납부할 때에는 조합원은 이 공제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분담금을 현금과 은행어음으로 납입한 경우, 어음은 현금기간이 끝나는 전일까지 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금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3조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①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부터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조합원이 이 약관 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37조(사고발생 시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4조 공제계약의 부활

- ① 제53조(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조합원이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5조 추가분담금 등의 납입

공제규정 제27조(결손금의 처리) 제30조(자부담금)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분담금 등의 납입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일 안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6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5편 승무원공제 보상내용

제57조 보상책임(승무원공제)

① 승무원 부상시 보상내용

1.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승무원(운전자)이 죽거나 다친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 합니다.
2. 공제조합이 승무원 공제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망공제금

승무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부상공제금

승무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진단서가 수개인 경우 가장 긴 진단을 기준)

- (1) 4주 이상 6주 미만 : 1,000,000원
- (2) 6주 이상 10주 미만 : 3,000,000원
- (3) 10주 이상 20주 미만 : 7,000,000원
- (4) 20주 이상 : 10,000,000원

3. 공제조합이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부상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망공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내용

1. (공제금의 지급)

가. 공제조합은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승무원이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승무원에게 지급합니다.

-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승무원과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승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다. ‘가’항 및 ‘나’항의 피해자에서 승무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피해자 사망의 경우 : 5,000,000원
- 피해자 중상해의 경우 : 5,000,000원
- 피해자 부상의 경우 : 진단주수 기준으로(진단서가 수개인 경우 가장 긴 진단을 기준)
 - 10주 이상의 경우 1,500,000원
 - 8주 이상 10주 미만의 경우 1,000,000원
 - 4주 이상 8주 미만의 경우 500,000원

바. ‘가’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 ‘가’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아.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마’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 ‘가’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승무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 ‘나’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승무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공제금의 비례분담)

가. ‘1’항(공제금의 지급) ‘가’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나’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나.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div \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58조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승무원 공제

- 가. 승무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나. 승무원이 범죄를 목적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다. 승무원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라. 승무원이 마약 또는 약물 등 (용어정의③)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마.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손해
- 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사.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에 기인한 손해
- 아.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제59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승무원 부상시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 1. 승무원은 다음의 경우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사망공제금의 경우에는 승무원이 사망한 때

나. 부상공제금의 경우에는 승무원의 진단서가 발급된 때

2. 유의사항

가. 승무원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제금 청구서와 진단서, 그 밖에 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승무원 이외의 자의 공제금 청구

1. 승무원의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공제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승무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③ 만기환급금의 지급

해당지부 승무원공제 총 수입분담금에서 총 지급공제금(미지급공제금 포함)과 공제조합에서 정한 관리비를 차감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만기시까지 계약을 유지한 승무원공제 계약자에게 공제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④ 해지환급금의 지급

조합원(승무원)이 공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분담금에서 지급공제금 및 공제조합이 정한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더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별도 규정 제정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공제조합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표 1> 대인공제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 레 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산식> —</p> <p>(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p> </div>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항 목	지급 기준
	<p>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p> <p>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p>— <용어풀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p> <p>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p> <p>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p> </div> <p>나) 사업소득자</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 <산식>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연간수입액} - \text{주요경비} - (\text{연간수입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제세공과금}] \times \text{노무기여율} \times \text{투자비율}$ </div> <p>(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p> <p>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p> <p>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p> <p>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p>

항 목	지급 기준
	<p>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용어풀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이 공제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p> <p>②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div> <p>— <산식>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div> <p>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 <용어풀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p> </div>

항 목	지급 기준
	<p>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p> <p>(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p> <p>(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항 목	지급 기준										
	<p>(5) 외국인</p> <p>(가) 유직자</p> <p>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p> <p>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p> <table border="1" data-bbox="438 1512 1353 1774">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 <th>취업가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56세부터 59세 미만</td> <td>48월</td> </tr> <tr> <td>59세부터 67세 미만</td> <td>36월</td> </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 <td>24월</td> </tr> <tr> <td>76세 이상</td> <td>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항 목	지급 기준
	<p>(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p> <p>(5) 외국인</p>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p>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frac{1}{1+i} + \frac{1}{(1+i)^2} + \dots + \frac{1}{(1+i)^n}$ </div> <p>i=5/12%, n=취업가능월수</p>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공제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p>

항 목	지급 기준																																								
	<p>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2. 위자료</p>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data-bbox="440 640 1382 864"> <thead> <tr>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0</td> <td>5</td> <td>75</td> <td>9</td> <td>25</td> <td>13</td> <td>15</td> </tr> <tr> <td>2</td> <td>176</td> <td>6</td> <td>50</td> <td>10</td> <td>20</td> <td>14</td> <td>15</td> </tr> <tr> <td>3</td> <td>152</td> <td>7</td> <td>40</td> <td>11</td> <td>20</td> <td></td> <td></td> </tr> <tr> <td>4</td> <td>128</td> <td>8</td> <td>30</td> <td>12</td> <td>15</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공제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공제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p>3. 휴업손해</p>	<p>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div>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p>(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p> <p>(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p> <p>(3) 취업가능연한: 60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p>																																								

항 목	지급 기준
	<p>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65세로 함.</p>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p>(1) 유직자</p> <p>(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p> <p>(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p> <p>(2) 가사종사자</p> <p>(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용어풀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p> </div> <p>(3) 무직자</p> <p>(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p> <p style="padding-left: 2em;">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p> <p style="padding-left: 2em;">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p>(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항 목	지급 기준								
	<p>(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용어풀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div> <p>다. 지급 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p> <p>(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r> <tr> <td>3급~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p>5. 그 밖의 손해배상금</p>	<p>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p> <p>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공제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 자 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475 1496 1375 1899"> <thead> <tr> <th data-bbox="475 1496 906 1541">노동능력상실률</th> <th data-bbox="906 1496 1375 1541">인정액 (단위 : %,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5 1541 906 1585">45% 이상 50% 미만</td> <td data-bbox="906 1541 1375 1585">400</td> </tr> <tr> <td data-bbox="475 1585 906 1630">35% 이상 45% 미만</td> <td data-bbox="906 1585 1375 1630">240</td> </tr> <tr> <td data-bbox="475 1630 906 1675">27% 이상 35% 미만</td> <td data-bbox="906 1630 1375 1675">200</td> </tr> <tr> <td data-bbox="475 1675 906 1720">20% 이상 27%미만</td> <td data-bbox="906 1675 1375 1720">160</td> </tr> <tr> <td data-bbox="475 1720 906 1765">14% 이상 20% 미만</td> <td data-bbox="906 1720 1375 1765">120</td> </tr> <tr> <td data-bbox="475 1765 906 1809">9% 이상 14% 미만</td> <td data-bbox="906 1765 1375 1809">100</td> </tr> <tr> <td data-bbox="475 1809 906 1854">5% 이상 9% 미만</td> <td data-bbox="906 1809 1375 1854">80</td> </tr> <tr> <td data-bbox="475 1854 906 1899">0 초과 5% 미만</td> <td data-bbox="906 1854 1375 1899">50</td> </tr> </tbody> </table>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단위 : %, 만원)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단위 : %, 만원)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항 목	지급 기준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p>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p>

항 목	지급 기준
	<p>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p> <p>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p>
3. 가정간호비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p> <p>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항 목	지급 기준
	<p>나. 지급 기준</p>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별표 2> 대물공제 지급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p> <p>(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p> <p>(가) 내용연수^(*2)가 지난 경우</p> <p>(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p> <p>(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p>(*2)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2. 교환가액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p> <p>(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p> <p>(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p>3. 대 차 료</p>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p> <p>(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p> <p>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p> <p>(*)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p> <p>(*)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벤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p>
-----------------	---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4. 휴 차 료	<p>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p>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 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공제 I」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 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공제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 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 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공제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p>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p>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p>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함.</p>
4. 기왕증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항 목	지급 기준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공제금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급	3,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수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p>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p>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p> <p>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5급	9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p> <p>4. 안정성 추체 골절</p> <p>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6. 상완골 간부 골절</p> <p>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p> <p>9. 요골 경상돌기 골절</p> <p>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p> <p>11. 수근 주상골 골절</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포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 style="text-align: center;">6급</p>	<p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삼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	---

		<p>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7급	500만원	<p>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p> <p>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p> <p>5. 쇄골 골절</p> <p>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 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p> <p>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p> <p>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 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p> <p>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p> <p>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p> <p>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p> <p>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p> <p>17. 다발성 중수골 골절</p> <p>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 style="text-align: center;">8급</p>	<p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9급</p>	<p>24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8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관술, 유경 피관술, 원거리 피관술, 국소 피관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두부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시 인정한다.</p>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p>
상·하지	<p>공통</p> <p>가. 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p>상 지</p>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p>하 지</p>	<p>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공제금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해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1급	1억5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p>8급</p>	<p>4,5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p>9급</p>	<p>3,8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p>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10급	2,700만원	<p>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p> <p>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p> <p>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11급	2,3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p>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p>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p>
13급	1,500만원	<p>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p> <p>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p> <p>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p> <p>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p> <p>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p> <p>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14급	1천만원	<p>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p>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 비 고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체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

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
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공제분담금 단기요율표 [별표3]

계약기간	단기요율
7일까지	6%
15일까지	10%
1월까지	15%
2월까지	20%
3월까지	30%
4월까지	40%
5월까지	50%

계약기간	단기요율
6월까지	60%
7월까지	70%
8월까지	80%
9월까지	85%
10월까지	90%
11월까지	95%
12월까지	100%

(주) 공제계약기간 1년 적용분담금을 기준 계산

공 제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제2조 명 칭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 Taxi Mutual Aid Association)이라 칭한다. (개정 2012.12.17)

제3조 사 무 소

공제조합의 본부는 연합회 사무소 소재지에 두고, 조합원의 수, 자동차의 대수, 수입분담금 규모,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사업소(지역 팀, 주재원 포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7)

제4조 공제사업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에 대한 공제
3.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피용자가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1999. 1. 21 본호신설)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조합원의 편의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1999. 1. 21 본호신설)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1999. 1. 21 본호신설)
7.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개정 2015. 5. 7)

제 2 장 가입 및 계약

제5조 공제가입 및 계약

- ①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1996.12. 6 본항개정, 2012.12.17. 본항개정)
- ②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공제약관(이하“공제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012.12.17 본항개정)

제6조 가입금의 납입과 환급

- 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자동차 1대당 3만원을 가입금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입금은 전액 본부에서 적립·관리하여야 한다.(2012.12.17. 본항개정)
- ③ 공제조합은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 공제가입금 영수증 및 가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가입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한다. (1996. 12. 6 본항개정)
 - 1.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면허취소나 폐지등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에 대한 가입금
 - 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다만, 공제계약중인 때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분담금과 공제금

제7조 분담금의 결정

- ①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정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공제분담금(이하“대인공제 I 분담금”이라 한다)은 순분담금, 보장사업분담금 및 부가분담금으로 정한다.(2003. 5. 7 본항개정)
- ② 분담금은 실적 및 예정손해율 등을 감안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2.17, 2015. 5. 7)
- ③ 분담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결산결과 경영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분담금 20%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상할 수 있으며, 연도말 결산결과 경영흑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분담금 20% 범위내에서 결산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하할 수 있다.(2012.12.17. 본항개정)

제8조 분담금의 할인 및 할증

- ① 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고 및 손해율 실적 등에 따라 분담금을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2012.12.17. 본항개정)
- ② 공제계약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제계약을 보험회사와의 자동차보험계약으로 변경(이하“이탈”이라 한다)하였다가 다시 공제계약을 할 경우 또는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하였던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할 때에 최초의 할인할증 적용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갱신계약시 적용율과 공제조합에서 계약전 3년이내의 사고 및 손해율실적 등이 있는 경우 그 실적에 의한 할인할증율 중 높은율을 적용한다.
- ③ 공제조합은 연도말 결산결과 경영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결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별로 분담금을 추가할인 할 수 있다. 다만, 대인공제 I 분담금의 경우 공제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할인 할 수 있다.(2012.12.17. 본항개정)

제9조 분담금의 납입과 책임기간

- ①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는 공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공제분담금의 분할납입을 요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2000. 11. 3 분항개정)
- ②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 분담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는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비 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 원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1997.11. 7, 2015.05. 7)

1. 이사장 1인
2. 상무이사 2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공제조합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012.12.17 본항개정)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17, 2015. 5. 7)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임이나 파면처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5. 5. 7)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 중에서 선임된 감사로서 이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감사의 경우에는 당해 감사가 겸임하고 있는 시·도 사업조합이사장의 직을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997.6.13 본항 개정)

② 보궐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 만료 후 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업무처리에 관하여 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2012.12.17. 본항개정)

②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집행과 재산 및 회계상황을 감사한다.

제15조 임원의 책임

① 임원이 법령, 공제규정 또는 공제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2.12.17. 본항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책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2012.12.17 본항개정)

제16조 고문

①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연합회장이 위촉 한다.

③ 고문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2012.12.17 본조신설)

제1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며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12.17 본항개정)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사업조합 이사장 중에서 선임된 운영위원으로서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운영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시·도 조합 이사장직을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2012.12.17 본항신설)

③ 운영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운영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2.12.17. 본항신설)

제19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연합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의사, 관계, 학계, 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제금 지급기준의 설정, 변경 및 공제금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한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이의에 관한 조정
3. 기타 공제업무에 관한 자문

제20조 자문위원회

- ①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부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부자문위원회의 위원은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지부의 지부장이 추천하여 연합회장이 위촉한다.
- ③ 지부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추천일 현재 전 대수 공제계약을 유지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 ④ 연합회장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004. 6. 17 본조 개정)

제21조 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2.12.17 본조개정)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 사업년도

공제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23조 예 산

공제조합은 매사업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5. 5. 7)

제24조 결 산

- ① 공제조합이사장은 매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12.17. 본항개정)
- ③ 공제조합 이사장은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국토교통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5. 5. 7)

제25조 준비금 등의 적립

- ① 공제조합은 법률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준수 세부 기준’에 의하여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 ② 제1항의 준비금에 대한 계상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재산의 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재산을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신탁,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그 이용
 3. 조합원 대출 및 조합원 어음할인
 4.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2.12.17. 본항개정)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재산운용은 총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결손금의 처리

연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별 결손금은 당해 사업년도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지부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정 기간내에 보전하여야 한다.(2012.12.17 본호개정)
2. 결손금이 누적되는 지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중지케 할 수 있다. (2003. 5. 7 본호개정, 2012.12.17. 본호개정)

제28조 공제경영흑자액 부과

흑자지부의 경우 신규계약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별 해당 경영흑자액을 부과할 수 있다. (1995. 7.31 본조신설, 2012.12.17 본조개정)

제29조 손해액 보전

① 경영수지가 흑자인 지부에서 공제계약조합원이 공제계약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제계약을 손해보험회사와의 자동차보험계약으로 변경하거나 감차, 휴업, 휴지, 말소 등으로 공제계약이 변경(이하“이탈”이라 한다)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공제계약차량 중 일부가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이탈당시의 당해 조합원의 전체 계약대수(대인공제Ⅱ 계약대수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이탈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2014.10.13. 본항개정)

② 경영수지가 적자인 지부에서 공제계약조합원이 이탈한 때에는 제1항의 흑자지부의 손해액 보전방법에 의한 손해액과 이탈당시의 당해지부 총결손액에 지부전체계약대수(대인공제Ⅱ 계약대수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이탈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액은 당해 조합원이 공제계약한 바 있는 이탈전 계약기간 종료일 과거 3년간(공제계약기간 중도에 이탈한 때에는 전계약기간 종료일 과거 3년간에 이탈당시까지의 기간을 더한다) 당해 조합원에 의하여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한 지급공제금에 미지급공제금을 더하고 당해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공제(控除)한 차액으로 하며 담보종목(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등)별 이탈일자가 상이한 때에는 별도 계산하여 합산한다.(1999. 1. 21 본조신설)

제30조 자부담금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자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제금에 충당할 수 있다. (1999. 1.21 본조신설, 2012.12.17 본조개정)

제 7 장 보 칙

제31조 규정제정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2조 벌 칙

공제조합 운영으로 야기되는 비위와 부조리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 의법 조치케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